

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연속·신규등록 컨설팅사업자 모집공고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을 위한 전문 민간 컨설팅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컨설팅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참여(예정)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팅사업자(신규·연속등록)

구분	모집대상	내용
연속등록	2024년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등록 컨설팅사	서류심사 이후 '25년 컨설팅사 Pool 등록 가능 (1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유지)
신규등록	농식품 해외인증 분야 전문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국내 사업자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동안 등록 가능하며 차년도에도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유지 가능

- 수행사업 : 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별첨)

할랄(JAKIM, BPJPH,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

- *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에 대한 식품안전·품질, 법적기준 및 인증기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단순 분석의뢰, 공증 대행, 번역 등은 미해당)
- 접수기간 : '25. 1. 8.(수) ~ 1. 17(금) 까지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해 온라인 서류 제출

2. 등록 기준

- 선정절차 : 대상업체 서류심사 이후 '25년 컨설팅사 POOL등록
 - 사업자 자격요건 및 컨설턴트 자격요건(세부내역은 5번 자격요건 참조)

구 분	자격요건
등록대상 (사업자)	•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 관련 최근 2년 내 10건이상 해외인증등록 컨설팅 수행실적을 보유해야하며, 자격을 갖춘 상근 컨설턴트 1명이상 보유
자격요건 (컨설턴트)	•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 관련 최근 2년 내 5건이상 해외인증등록 컨설팅 수행실적을 보유 및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5번 자격요건 참조)

- * 지원사업 대상인증제도 관련 2023.1.1.~2025.1.7.에 수행한 컨설팅 실적 기준
- * 컨설턴트는 법인 소속 또는 개인사업자로 택일하여 신청(복수지원 불가)

- 등록 제외 : 등록 제외 대상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해 온라인 제출

순서	구비서류 목록	제출 부수
1	• 컨설팅사 등록신청서 (별첨1)	1부
2	① 컨설턴트 보유현황 및 컨설턴트별 프로필 (별첨2)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록 증빙자료 목록 등 제출 必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포함] (별첨3)	컨설턴트별 각 1부
3	• 최근 2개년('23~24년) 컨설팅사 컨설팅 수행 실적 (별첨4) (컨설팅 계약서, 취득 인증서 사본 포함필수) *사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컨설팅사 등록 증빙자료 목록(양식) 제출必	1부
4	•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상근 컨설턴트 확인용) - 사업장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개인별 보험 자격득실 포함	1부
5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컨설팅사업자 유의사항 인지조서(별첨5)	1부
6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별첨6)	각 1부
7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확인서 원본	공동인증서를 통한 간편제출 (aT원패스)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총2종 원본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9	• 최근 2개년(23~2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수행사는 '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컨설팅사 풀(POOL)에 등록되며, 2025년 aT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등록 관련 컨설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컨설팅사업자는 등록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참여 기간 동안 등록기준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등록제외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즉시 aT에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및 지원사업 컨설팅비용 정산 시 제외될 수 있음
- 등록 시 제출한 컨설팅사업자의 현황(일반현황, 컨설팅분야, 컨설턴트 현황) 및 직전연도 컨설팅 실적(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서 수행한 건에 한함)은 aT 홈페이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수출업체 등에게 제공되며,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 aT에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 주요 변경사항 : 컨설팅분야, 컨설턴트 현황, 사업자현황(연락처, 이메일, 주소)
- 제출기한 종료이후 증명서 부실, 누락 등 서류구비 불완전 등 사유로 평가 제외 가능

5. 자격요건 및 등록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요건

-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별첨목록 참고) 관련 최근 2년 내 10건 이상 해외인증·등록 컨설팅 수행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 상근컨설턴트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지원사업 대상인증제도 관련 2023.1.1.~2025.1.7.에 수행한 컨설팅 실적 기준

** 단,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설립일이 2년 이내의 사업자는 5건 이상 관련 실적 보유

*** 실적은 인증·등록 완료 건만 인정(진행 중인 건 불인정)

□ 상근 컨설턴트 자격요건

- 지원사업 대상 인증제도(별첨목록 참고) 관련 최근 2년 내 5건 이상 해외인증·등록컨설팅 수행실적 보유 및 다음의 각 호의 학력·경력·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 1)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해외 인증·등록 분야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2)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해외 인증·등록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3) 학사 학위(학사 이하 포함)를 보유하고, 해외 인증·등록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4)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 인증·등록 분야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5)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 인증·등록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지원사업 대상인증제도 관련 2023.1.1.~2025.1.7.에 수행한 컨설팅 실적기준으로 인증·등록완료 건만 인정(5건 이상)

□ 등록 제외대상

-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인 사업자 및 휴·폐업중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업자
- 컨설팅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수사·소송과 관련되어 있거나, 제재 이력(진행중인 건 포함)이 있는 부정수급 수출업체와 관련된 컨설팅사 및 해당 컨설턴트를 보유한 컨설팅사

❑ 등록 제한사유

- 등록 관련 서류를 위·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등록 관련 증빙 제출 또는 추가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민원발생, 운영기준 위반 등의 확인을 위한 점검·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농식품 해외인증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 지원사업 정산 시 컨설팅내역 등의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업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허위 제안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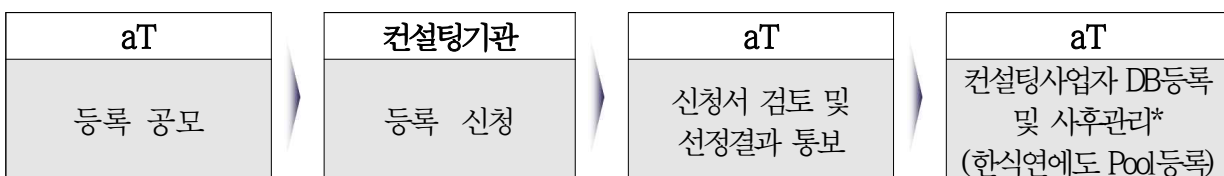
6. 서류심사기준 및 등록결과

❑ 대상업체 서류심사

- 등록기준 자격요건 충족여부
- 등록 제외·제한대상 미해당 여부
- 필수 구비서류 적정여부
-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

※ 과거 수출업체 컨설팅 진행사항 관련하여 추가 서류 및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등록결과 : 2025. 1. 24.(금)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발표(추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7. 문의처 : aT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7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